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주요내용

13.3.21(목)

◦ 13.1.14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심각한 범죄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한 점,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메커니즘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점 상기 (전문)

◦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하고,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(1항)

◦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평가하고, 동 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

- 정기보고서를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

◦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 결정

- 구성: 총3명(특별보고관 및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)
- 임기: 1년
- 조사대상: 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 31항에 언급된 식량권 침해·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·고문과 비인간적 대우·자의적 구금·차별·표현의 자유 침해·생명권 침해·이동의 자유 침해·타국민의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을 포함한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,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
- 고려사항: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,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의 책임
- 활동결과 보고: 제24차 인권이사회 및 제68차 총회에 구두보고 및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서면보고서 제출
- 보고서 활용: 적절한 조치를 위해 이 보고서들을 유엔 관련기구 및 사무총장에게 전달
- 북한의 협력: 조사위원회의 방북 허용 및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을 포함한 협력을 북한에 촉구
- 활동지원: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
- 기타: 유엔 관련기구 등의 조사위원회 및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장려

◦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, monitoring을 동반한 접근 보장을 북한 정부에 촉구. 끝.